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7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정부안, 오기형의원안) 2
2.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정부안, 오기형의원안) 6
3.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정부안, 오기형의원안) 8

I. 개요

1.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28.
-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 및 제82조제8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정부안, 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 대상: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등 - <신 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오기형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0)

☐ 2건의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45조의5¹⁾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 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 혹은 현저히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를 하거나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주주등에게 부여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정법인에 무상지원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재화·용역 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적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가령, 자녀소유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특정법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녀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실질적인 증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특정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적용 대상
·특정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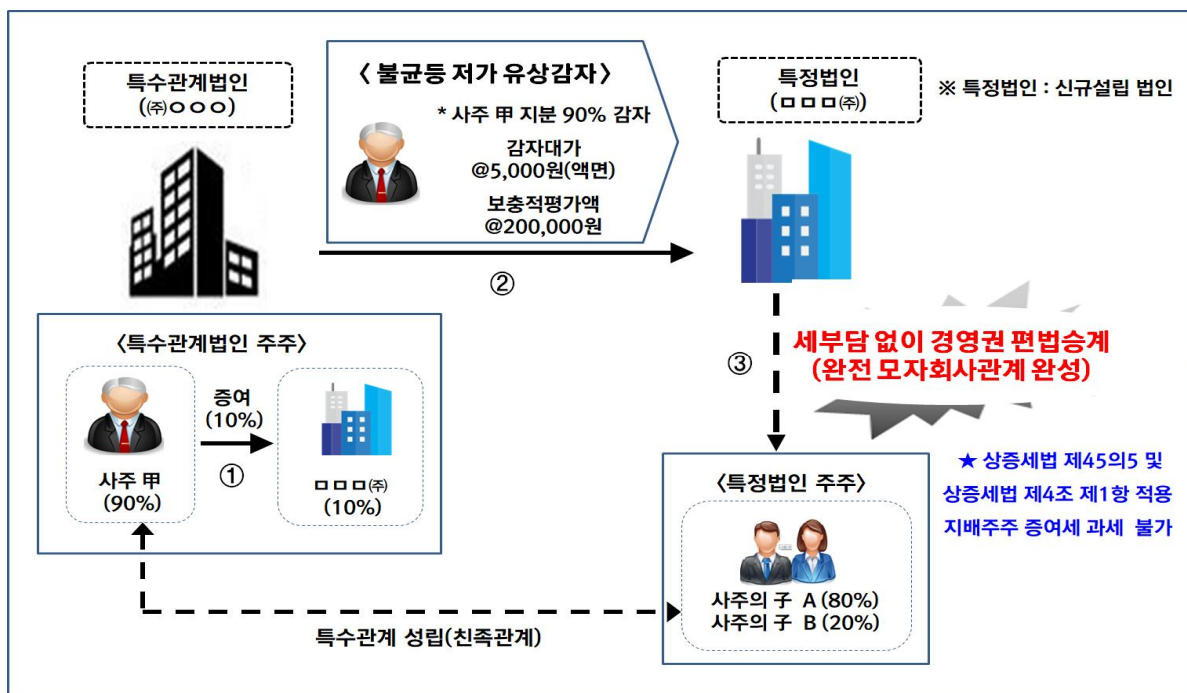
한 달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방식”의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가령, 특수관계법인의 사주가 자녀의 특정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다수 혹은 전부를 소각하는 경우 특정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주식의 가치와 지분율이 올라가고, 상향된 지분율로 자녀의 특정법인이 사주의 특수관계법인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 혹은 저가 양수 고가 양도 등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것임.

[조세회피 예시]



*불균등 감자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주)○○○의 경영권을 지배주주 자녀의 세부담 없이 편법승계하여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사례

- 이에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 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변칙적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2.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정부안, 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공제(제53조)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 <u>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u>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향 - <u>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u>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오기형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0)

☐ 개정안은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이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친족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좁히려는 것임.

☐ 정부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친족 범위³⁾의 경우에도 종래 ‘6촌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된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친족 범위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안 수용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친족은 수증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기 위한 것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친족은 세법의 적용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고 보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정부안, 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2조) ○ 제출 대상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의 지급명세서 및 명의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 전환사채등의 발행 인수인에 관한 사항 - <신 설>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현행과 같음) - <u>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u>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오기형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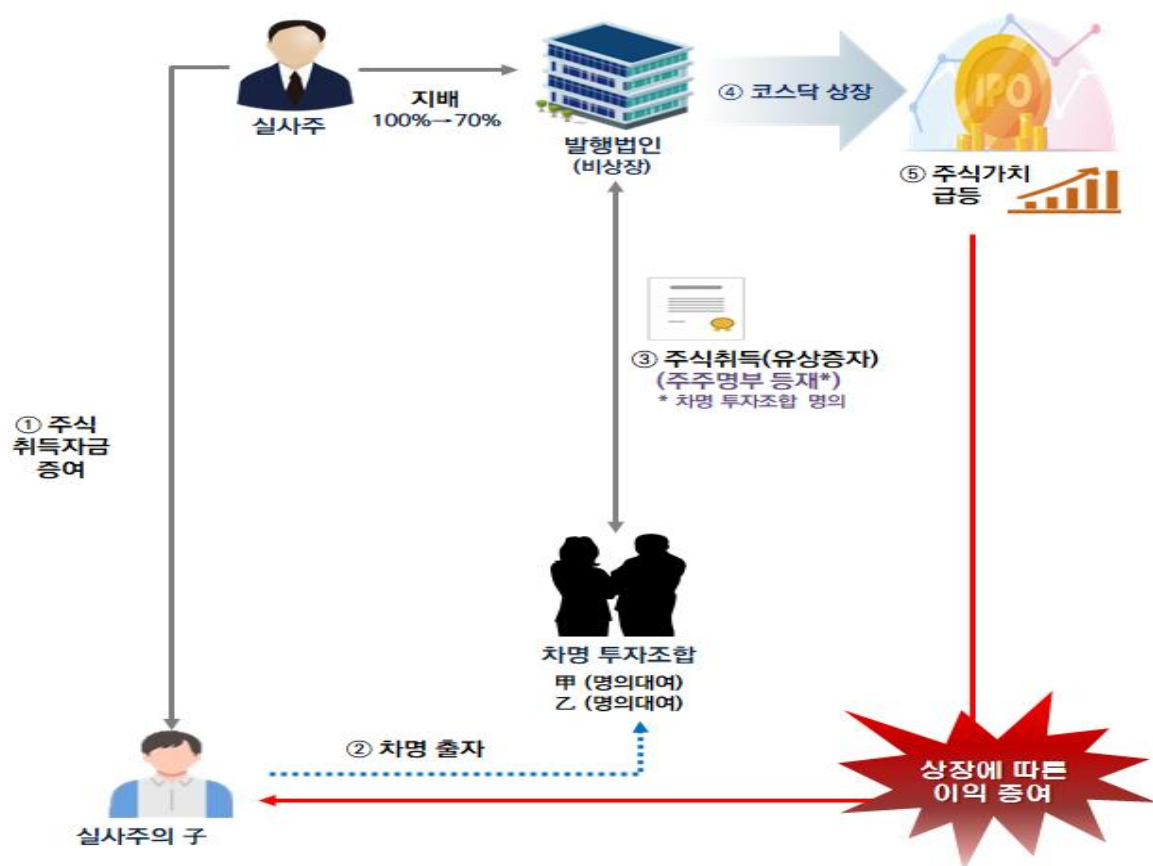
☐ 2건의 개정안은 투자조합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투자조합이 증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2조는 과세당국의 세원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상속·증여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의 지급명세서 및 명의변경 내용,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등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최대주주 등이 지배권을 확대하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적 증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조합을 이용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주식등 상장이익의 탈루(예시)]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상장 직전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함에도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

문 의 처
02)6788-5161